

2025대비 관세법 1차 OX 특강 정오표 - 윤준필 관세사

1. 제2장 부과징수(1)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

변경전	변경후
4. X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<u>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</u> 과 특허기간(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)이 만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.	4. X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<u>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</u> 과 특허기간(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)이 만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의 <u>다음날</u> 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

2.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(2)

변경전	변경후
3. X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당사국과 협의해야 하며, 당사국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회신이 오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	3. X <u>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당사국과 협의해야 하며, 당사국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회신이 오지 않거나 협의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.</u>

3. 제4장 감면·환급 및 분할납부

변경전	변경후
11. O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·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)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 방지물품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.	11. X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·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)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법 <u>제92조 정 부용품 등 면세</u> 규정을 적용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제8장 운송

변경전	변경후
7. O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. 다만,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7. X 보세운송은 <u>관세청장이</u>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. 다만,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